

# 심사보고서

## 【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310

2023. 11. 30.

복지환경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3. 11. 10. / 한송연 의원 등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○ 제안이유

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금연에 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#### ○ 주요내용

- 가.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(안 제1조, 제3조제1항)
 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6항 → 제9조제7항
- 나. 관련 법령의 제정과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 (안 제3조제1항제3호)
  - (기존) 「학교보건법」 내 학교정화구역 삭제
  - (신설)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신설
- 다. 금연구역 지역 장소 추가 및 신설 (안 제3조제1항제5호~제6호)
  - (추가)5호.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→ 가스충전소, 전기차충전소 및 주유소

- (신설)6호.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
- 현행 6호는 7호로 변경

라. 부칙
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제7조의 과태료 규정 적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변화하는 생활상에 맞춰 흡연으로 인한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인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-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전기차의 수요와 이에 따른 전기차충전소는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금연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
- 아울러 우리시는 경의중앙선·경춘선·4호선에 16개 역이 개통되어있고 8호선의 추가 개통 등 철도교통 인프라 확대와 이용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바, 전철역 출입구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상위법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4. 질의·답변요지 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